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1 발의연월일: 2020. 6. 22.

발 의 자: 박덕흠·홍준표·권성동

홍문표 • 이철규 • 최승재

정점식 · 김석기 · 김예지

金炳旭・최춘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,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하여 취득세·재산세를 감면하 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(농가 고령화율 44.7%, '18년말 기준), 쌀 소비량 감소(1인당 연간 쌀 소비량 : 1989년 121.4kg → 2019년 59.2kg), 비료·농약 등 각종 농기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,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,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

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
 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.
- 나.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(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4 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안 제6조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정 한 감면) ① -----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 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「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"이라 한다)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(논, 밭, 과수원 및 목장용 지를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 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 ----- 2024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 1. ~ 2. (생략)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 2 ----

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
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 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
 까지 면제한다.

2
<u>024년 12월 31일</u>
l. ~ 3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)
①
000414
<u>2024년</u>
<u>12월 31일</u>
2
<u>2024년 12월 31일</u>